

입법예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 10.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1. 개정이유

'24년 정부 예산안에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소농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이 반영됨에 따라 지급단가 규정을 변경하고, 경관보전직불제의 지급대상 초지 요건을 완화하며, 농업인 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조사 및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변경(안 제8조제1항)
- 나. 선택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행정조사 7일 전 사전통지 규정을 마련(안 제25조제5항, 제32조제4항, 제40조제5항, 제49조제4항)
- 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요건 중 '2017년~2019년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요건이 삭제(공익직불법 개정, '22.10월)됨에 따라 경관작물직불제 지급대상 초지 요건에도 적용(안 제36조)
- 라.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제한 처분의 가중·감경 사유를 구체화(안 별표4 제1호라목)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120만원”을 “130만원”으로 한다.

제2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위한 행정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 일시, 방법 등을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위한 행정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 일시, 방법 등을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를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초지로서,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에”로 한다.

제4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위한 행정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개시 일 7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 일시, 방법 등을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위한 행정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개시 일 7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 일시, 방법 등을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4 제1호라목 전단 중 “고려하여”를 “고려하여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중 사유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소농직접지불금의 농가당 지급 단가는 <u>120만원</u> 으로 한다.	제8조(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① ----- ----- ----- <u>130만원</u> -----.
제25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25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위한 행정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 일시, 방법 등을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32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32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위한 행정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 일시, 방법 등을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36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	제36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

제49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 ③ (생략)

<신설>

[별표4]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다. (생략)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제한 기준(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제외한다) 또는 등록제한 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등록제한 기간은 연 단위로 감경하며,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위한 행정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 일시, 방법 등을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4]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고려하여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신 설 >

마. (생 략)
2. 개별기준
(생 략)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
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
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마. (생 략)
2. 개별기준
(현행과 같음)